

2022년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산별현장교섭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1> 임금

- 2022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상한다.
 -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지방의료원 중앙협약서 제36조 제1항<별표 1>을 아래<별표2>와 같이 변경한다.
 - 위①항의 2022년도 임금 인상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로 하며 개인별 소급적용하여 2022년 내에 지급한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022년도 지방의료원 특성교섭 합의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 지급적용 시기는 2023년 1월1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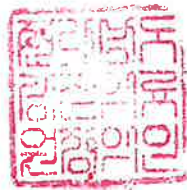
<2> 단체협약

- (야간근로 제한)
 - 의료원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월 8일당 1일의 유급수면휴가(sleeping off)를 부여한다. 당해 조항의 적용대상자는 3교대, 응급실원무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수술실로 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특수검진차량 제공)
의료원은 직원의 특수검진을 위하여 연 2회 특수검진차량을 제공한다.
- (감염병 대응 코로나특별격려금 지급)
 - 의료원은 코로나전담병원 장기대응으로 공공의료현장에서 헌신으로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6월 30일 기준 재직중인 전 직원 1인당 50만원의 “코로나 수고격려금”을 지급한다.
 - 코로나 수고격려금은 2022년 12월내에 지급한다.



2022년 12월 29일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장 정기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대신하여 강진의료원지부장 신경옥



부속합의서

노·사는 “코로나 수고격려금” 지급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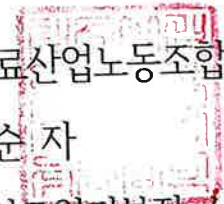
1. 지급 대상은 강진의료원에 재직중인 전 직원(퇴직자,육아휴직자는제외)으로 하되 은라인마케터인력은 제외한다. 단 기간제,육아휴직대체인력등 계약직은 포함시킨다.

2022년 12월 29일

전 라 남 도
강진의료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 순 자
대신하여 강진의료원지부장 신경옥



< 별표2 >

지방의료원 2022년 기본급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약사
1	3,403,000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150,200
2	3,528,900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2,287,800
3	3,658,600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2,425,300
4	3,789,200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2,562,900
5	3,921,900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2,700,400
6	4,055,900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2,838,000
7	4,191,500	3,660,900	3,291,1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2,975,600
8	4,327,500	3,789,500	3,413,4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3,113,100
9	4,464,600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3,250,700
10	4,601,600	4,047,300	3,659,7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3,388,200
11	4,738,800	4,177,300	3,775,1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3,525,800
12	4,881,100	4,299,600	3,886,5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3,663,300
13	5,013,300	4,414,000	3,992,2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3,800,900
14	5,136,100	4,520,700	4,090,8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3,938,500
15	5,249,200	4,621,200	4,183,9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4,076,000
16	5,354,700	4,716,100	4,271,5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4,213,600
17	5,452,700	4,804,200	4,353,9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4,351,100
18	5,543,800	4,886,400	4,431,7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4,488,700
19	5,628,000	4,963,200	4,505,0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4,626,300
20	5,707,000	5,035,000	4,573,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4,763,800
21	5,780,000	5,102,100	4,638,3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4,901,400
22	5,847,700	5,165,000	4,699,0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5,038,900
23	5,910,100	5,224,100	4,756,4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5,176,500
24	5,968,500	5,279,800	4,809,9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5,314,000
25	6,016,300	5,330,700	4,860,6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5,451,600
26	6,062,100	5,373,800	4,908,3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6,104,500	5,413,600	4,947,9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5,451,600	4,985,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5,020,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5,054,7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강진의료원 지급율표

(2023.01.01.)

구분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85%	100.00%
1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66%	100.00%
1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60%	100.00%
1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44%	100.00%
1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30%	100.00%
1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16%	100.00%
1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12%	100.00%
2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06%	100.00%
2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03%	99.98%
2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8.95%	99.89%
2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8.87%	99.81%
2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8.79%	99.74%
2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8.75%	99.73%
2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8.74%	99.73%
2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8.73%	99.30%
2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8.72%	
2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1	100.00%	100.00%	100.00%	100.00%			
32				100.00%			

2022년 지방의료원 특성교섭 조정안

<1> 임금

1. 2022년 지방의료원 임금은 2022년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의료원 중앙협약서 제36조 제1항 <별표 2>를 별첨한 <별표 2>와 같이 변경하여 인상한다. 임금인상 적용 시기는 2022년 1/4분기 내로 하며, 세부 시기는 지부별 노사 합의에 따른다. 군산의료원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되, 세부 사항은 노사 합의로 따른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공무원 보수 규정(기본급표)을 적용하고 있는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은 타 의료원 지급 수준과 비교하여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삼척의료원을 포함하여 임금인상과 지급 시기를 별도 노사 합의로 정한다.
3. 임금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단체협약

1. (육아휴직 확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2년으로 한다. 추가로 발생하는 육아휴직 1년(무급)에 대해서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호봉 및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임금피크제도) 노사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직급보조비) 지방의료원 중앙협약서 직급보조비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단, 군산의료원은 2022년도 지방의료원 특성교섭 합의를 준용한다.

<별표 3.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구분	월지급액(변경전)	월지급액(변경후)
2급	500,000원	500,000원
3급	400,000원	400,000원
4급	250,000원	250,000원
5급, 약사	165,000원	<u>175,000원</u>
6급	155,000원	<u>165,000원</u>
7급, 8급	145,000원	<u>155,000원</u>

4. (자녀돌봄유급휴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른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자녀당 연간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단, 이 합의를 이유로 기존 지부별 단체협약을 저하할 수 없다.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②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③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5. (감염병 전담 대응 특별휴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등 국가재난 발생에 따라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간동안 보건의료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 유급휴가제도를 의료원에 근무 중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모두 충족될 경우 6개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 ①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등 국가재난 발생에 따라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 ②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날짜가 포함되는 달에서 해제되는 날짜가 포함되는 달까지 전담 병원 지정에 따른 감염병 병상 운영을 위해 소개(疏開)하는 병상이 전체 허가병상의 40%를 넘을 경우

2022. 8.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사용자 대표

위원장 나순자 (代 이 선 희)

원주의료원장 권태형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부속합의서

노·사는 상급단체파견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상급단체 파견 근무자의 복지포인트는 소속 지방의료원 조합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2.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등에 대해서는 각 소속 지방의료원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2. 8.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사용자 대표

위원장 나순자 (代 이선희)

원주의료원장 권태형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별표 2>

지방의료원 2022년 기본급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약사
1	3,403,000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150,200
2	3,528,900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2,287,800
3	3,658,600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2,425,300
4	3,789,200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2,562,900
5	3,921,900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2,700,400
6	4,055,900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2,838,000
7	4,191,500	3,660,900	3,291,1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2,975,600
8	4,327,500	3,789,500	3,413,4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3,113,100
9	4,464,600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3,250,700
10	4,601,600	4,047,300	3,659,7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3,388,200
11	4,738,800	4,177,300	3,775,1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3,525,800
12	4,881,100	4,299,600	3,886,5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3,663,300
13	5,013,300	4,414,000	3,992,2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3,800,900
14	5,136,100	4,520,700	4,090,8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3,938,500
15	5,249,200	4,621,200	4,183,9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4,076,000
16	5,354,700	4,716,100	4,271,5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4,213,600
17	5,452,700	4,804,200	4,353,9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4,351,100
18	5,543,800	4,886,400	4,431,7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4,488,700
19	5,628,000	4,963,200	4,505,0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4,626,300
20	5,707,000	5,035,000	4,573,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4,763,800
21	5,780,000	5,102,100	4,638,3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4,901,400
22	5,847,700	5,165,000	4,699,0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5,038,900
23	5,910,100	5,224,100	4,756,4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5,176,500
24	5,968,500	5,279,800	4,809,9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5,314,000
25	6,016,300	5,330,700	4,860,6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5,451,600
26	6,062,100	5,373,800	4,908,3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6,104,500	5,413,600	4,947,9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5,451,600	4,985,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5,020,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5,054,7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2022년 보건의료산업 신별중앙교섭 합의서

① 임금

1. 임금 인상

① 2022년 임금 인상은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다.

2. 생활임금

① 노사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에 대해 기관의 재정여건, 정부의 총액 인건비 범위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단, 민간중소병원 등 특성별 교섭 합의에 따른다.

② 9.2 노정합의 이행

1. 코로나19 대응

① 사용자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관련 정부 지침 및 권고안을 준수한다. 단, 지침 및 권고안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2. 불법의료 근절 및 업무 정상 운영

- ① 불법의료 근절 관련 9.2 노정 합의와 정부 지침을 준수한다.
- ② 9.2 노정합의에 따라 의료계·노·정간 논의 및 공청회를 거쳐 의료인력의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 범위가 마련되면 이를 준수한다.

3. 주5일제 전면 시행

① 주5일제 전면 시행에 관해서는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 합의에 따른다.

③ 노동조건 개선

1. 야간근로 제한

- ① 사용자는 생체리듬 파괴, 수면 부족, 각종 질환 유발, 일상생활 파괴 등을 초래하는 야간근무로부터 3교대 근무부서의 야간교대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sleeping off)를 부여한다. 적용범위 및 세부 기준은 사업장별 노사 합의로 정한다.

2. 야간간호료

- ① 야간간호료 수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다.
- ② 사용자는 야간간호료 사용 현황과 내역을 반기별로 조합에 제공한다.

3. 대체간호사 (플로팅간호사, floating nurse) 운영

- ① 사용자는 응급사직, 응급병가, 조가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교대근무제 개선 시범사업(대체-플로팅 간호사 운영)에 참여하거나 자체 시범 운영한다.
- ② 사용자는 부득이하게 당일 근무표 변경으로 휴무자(off 및 휴가자 등 포함)가 출근하는 경우 대체휴 일을 부여하고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 ① 사용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일정 및 준비계획과 추진과정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 ② 사용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연장근로를 최소화하며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③ 사용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적정인력을 인증평가 이후에도 유지한다.

5. 인권 보호

- ① 사용자는 입원안내서, 입원약정서, 외래진료설명서 등에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명시하고, 환자보호자로부터 설명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② 사용자는 직장 내 폭력(폭언, 폭력, 성희롱, 성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행위자를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하게 징계 조치를 한다.

6. 1인 근무 금지

- ① 사용자는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에 2인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용자는 모든 야간노동에 1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7. 병문안 문화 개선

- ① 사용자는 병문안 문화개선이 감염위험 예방,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개선, 업무 질 개선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임을 인식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방안과 실행지침을 연내에 노사 합의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② 사용자는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제도 안내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 ③ 노사는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기관 전체 병문안 문화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전 국민 홍보에 나설 것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노사 및 정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유관기관·단체(국가인권위원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직능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대국민 캠페인 사업을 추진한다.

8. 건강검진 휴가

- ① 사용자는 조합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결핵예방법 제4조에 의한 원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수검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한다. 원내 건강검진이 어려운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9. 헌혈휴가

- ① 사용자는 조합원이 헌혈에 참가할 경우 유급헌혈휴가를 보장하며 세부방안은 사업장별 노사 합의로 정한다.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 ① 사용자는 현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기관의 규정 및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단, 공공병원의 경우 정원 내에서 전환한다.
- ② 사용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원천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단체협약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5 조합활동 보장

1. 조합간부 유급교육시간

- ① 사용자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과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해 상집간부에 대해 연속 2일의 유급교육시간을 보장한다.

6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1.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 ① 노사는 환자·보호자 권리 향상과 병원 이용의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노사 합의로 정한다.

7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 ① 노사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 ② 노사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관련 감염관리수당 지급,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을 위한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 ③ 노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환자경험평가 개선, 병문안 문화 개선, 간호사 임상경력 제도화, 의사인력 확충, 특성별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8 정책협약

- ① 노사는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의 정책협약을 추진한다.

9 부칙

- ① 이 합의로 기존에 특성교섭 또는 현장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을 저하하지 않는다.

2020. 10. 12

2020. 10. 12

2022년 8월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보건의료산업 사용자 교섭대표

(특수목적공공병원 사용자 교섭대표)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암센터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서울시동부병원장

서울시북부병원장

서울시서남병원장

대한적십자사 회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지방의료원 사용자 교섭대표)

원주의료원장

(민간중소병원 사용자 교섭대표)

인천사랑병원장

2022.08.03